

작성과 : 위과  
진료과 :   
주진단명 : 변형 M / 45y

### 인체유래물들의 기증 동의서

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4호 제1항]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동의서 작성번호 |      |
| 성명       | 성년월일 |
| 주 소      |      |
| 연락처      | 성명 M |
| 성명       | 관계   |
| 연락처      |      |

인체유래물 은행 기관명 부산대학교병원  
연락처 051-240-7055

이 동의서는 귀하로부터 수집된 인체유래물(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를 합함)을 귀하의 의학정보 및 임상정보 등과 함께 인체유래물은행에 보관하여 질병의 진단 및 치료법 개발 등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동의를 밝히는 것입니다. 따라서 귀하는 다음의 내용을 읽고 궁금한 사항은 상담자에게 물고 충분히 생각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
- 1)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·세포·혈액·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장, 말초, 혈액, DNA, RNA, 단백질 등을 말하며, 귀하는 귀하의 인체유래물을 채취하기 전에 채취 방법 및 과정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.
- 2) 귀하가 제공한 인체유래물들은 인체유래물은행에 동의한 날부터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되면서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질병의 진단·예방·치료법 개발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연구에 보존·관리·연구·분류에 이용될 것이며, 알하는 경우 언제든지 동의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3) 인체유래물은행은 은행의 장이 생물계시서를 검토하여 국민의 건강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등에게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제공합니다.
- 4) 귀하가 이 동의서를 통해 인체유래물들의 기증에 동의한 경우, 인체유래물은행은 질병의 진단 및 치료법 개발 등의 연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귀하의 임상·역학정보 등의 개인정보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집된 개인식별정보는 보호됩니다.
- 5) 귀하가 제공한 인체유래물들은 귀하의 개인식별정보와 분리 보관 될 것이며 인체유래물은행 관련 정보를 연구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귀하의 개인식별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- 6)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은행의 운영, 그 밖의 부속적인 사항으로 인체유래물은행을 보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을 폐기하거나 보관하게 됩니다.
- 7) 연구결과에 (즉, 새로운 약물이나 진단 도구 등 상용개발 및 특허출원 등에 대해서는 귀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, 귀하가 제공한 인체유래물들을 이용한 연구는 학회와 학술지에 연구자의 이름으로 발표되고 귀하의 개인정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.

※ 위에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, 작성된 동의서 사본을 1부 받아야 합니다.

연구 목적 (인체유래물은행이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)

210mm × 297mm(백상지 80g/㎡(제철용품))

인체유래물들의 기증 동의서  
M / 45y 주민등록번호: 1\*\*\*\*\*

본인은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제1호와 인체유래물들의 기증과 관련하여 인체유래물들의 수집 및 보관, 이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본인의 인체유래물들을 기증하는 것에 자발적인 의사로 동의합니다.

동의서 작성일 2022년   월   일

인체유래물들 기증자    (    서명 )

법정대리인    (    서명 )

상담자    (    서명 )

구비서류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